

국민권의 위해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 필요

- 노무현 대통령,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서 언급 -

구홍일 경우회장, 「수사권 문제, 정기국회서 매듭」 강조



제 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 정부 주요 인사, 이택순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 내외 귀빈, 전·현직 경찰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정부는 치안질서 확립에 공이 많은 경찰관 339명과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일반인 3명을 비롯하여, 주민만족도·혁신추진 실적 등 기관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남지방경찰청, 대전북부경찰서, 서울경찰청 3기동대 37중대, 충남경찰청 2610 전경대, 포항남부서 방순대 등 5개 기관에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 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내부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기관 간의 일부 권한 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정도 어렵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

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처우도 함께 갖추어

나가겠다』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4천 명 이상 경찰인력 증원 ▶근속승진제 확대와 직급조정을 통해 승진적체 다소 해소 ▶일반직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국가배상 청구 가능 ▶순직경찰 유가족에 대한 보상상향 조정 등이 있었으며, 내년 7월 광주와 대전 경찰청이 신설되면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인 만큼 단계적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 리셉션에서 구홍일 경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고, 『지금의 경·검 관계는 일제시대 전 근대적인 상명하복 관계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편익을 위해 서로라도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평화시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래의 각종 시위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폭력성을 띠고 있어 경찰의 최루액 사용 검토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앙회, 금년도 제 2차 전국 이사회

- 예산안 의결 · 당면현안 논의 -

제 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갖고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기타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이날 구홍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16일 수상한 『5.16 민족상』과 관련 『경우회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아 조직의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지난 43년간 안보단체로서 쌓아온 공적과 더불어 근래 개최되고 있는 각종 안보대회에도 전국의 시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대거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구 회장은 『지난 5월 지진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경우가족들에 대해 구호금 5,000불을 전달한 것을 계기로 우리 경우회 대표들이 지난 9월 성금으로 지은

주택 증공식에 참석했고,印尼 경우회와 공식 우호협력 조인을 가짐으로써 국제 경우회간의 교류 협력을 성사시키는 한편 양국 민간외교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향후 인니 경우회측이 한국 답방을 고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취임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정말 경우회가 그만큼 발전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할 방침인 만큼 시도 회장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부의

안건에서는 제 1호 안건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경우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및 금년도 상반기 전국 각 급회 업무점검 평가 우수 지역회에 대해 특별 성과금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 수사권 독립’ 대선공약 반드시 지켜야

—— 표 창 원 (영국 엑시터대학 경찰학 박사, 경찰대 교수)

수사구조 개혁의 불꽃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은 패전국 일본의 전제주의적 국가동원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검찰로부터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은 지방분권화 하는 서구식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분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을 제정했다.

검사들이 반발하자 검사는 수사를 행하지도, 수사에 관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훈령을 제정했다(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29).

그러나,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는 엄상섭 의원이나 한계만 검찰총장 등 주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가 되어야겠지만 지금은 더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부여해야 한다’는 소위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상조론’이 이후 52년간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간 다툼은 역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충실한 사병역할을 수행했던 경찰은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을 무시하고 위축시키기 일췌였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법률전문가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군사독재에 맞게 고치고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헌법에 ‘검사의 독립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해 ‘경찰수사권독립 주장의 싹’을 없애고 법무부 소속 직원은 검사 이외에는 누구도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에 규정했다.

제5공화국 내내 시민의 항거와 학생운동은 온몸으로 막아낸 경찰은 권력의 총아를 입었지만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수사권 독립을 얻어내지도 못했다.

노태우 정권은 주로 ‘검찰권’을 이용해서 야당정치인들이나 재야운동가들을 탄압했고 기업들을 요리했다.

경찰의 위세에 눌려 경찰은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냈다. 수사권 독립 이야기만 나오면 고위 경찰간부들이 이런저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어 갔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경찰의 분권화가 민주주의 정착의 전제조건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경이 서서에 대한 비난과 폭로를 해대기 시작했고 결국 대통령은 양 기관에 ‘당분간 수사권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특별지시’를 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역시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참여정부 정권 초기 그 전개과정은 국민의 정부 때와 사뭇 달랐다. 정부혁신, 지방분권,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짜여진 로드맵에 따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이제는 정말 달라지는구나”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법개혁 역시 국민의 참여, 공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 핵심을 이루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고, 자치경찰제 역시 국회 법안상정 단계까지 이르렀다.

‘수사권 문제’도 역대 정권에서 보지 못한 ‘정면돌파’가 이루어지는 듯 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전제 하에 분장의 당사자인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싶은 말과 주장을 다 했고 대통령은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했다.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개정으로 김·경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그 결과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피해자가 존중받는 ‘선진한국’이 구현되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던 많은 이들에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주춤거림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주고 있다.

회감을 맞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조차 대통령은 수사의 “수”자조차 꺼내지 않았다. 대신 ‘기관 간 권한배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며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양보를 하지 않아 어렵다”는 자신감 없는 속내를 내비치는 데 그쳤다.

(2면으로 계속)

國民 편의 위한 수사권조정,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김·경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를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4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경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경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시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툼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